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42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강준현 · 김윤덕

정동영 · 박희승 · 신영대

이춘석 • 한병도 • 박용갑

박홍배 · 조계원 · 허 영

위성곤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, 범죄 증가, 붕괴사 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이에 현재 「빈집 및 소규모주 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.

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 용받게 되므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또는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

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8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)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)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 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84조의2(철거된 빈집의 부속토
	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) 「빈
	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
	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
	따른 빈집 및 「농어촌정비
	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
	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
	철거한 경우(「빈집 및 소규모
	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
	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
	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
	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
	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)
	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
	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0을
	<u>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</u>
	<u>다.</u>